

장애인 편의지원 내용(면접시험)

장애유형 및 등급		편의지원 항목
지체 장애	상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. 전담도우미 지원 . 관련서식 확대 제공 .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
	하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. 전담도우미 지원 .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 층 배치 .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
뇌병변 장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. 전담도우미 지원 .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.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 층 배치 . 필담면접, 문자통역, 의사전달용 컴퓨터 제공 . 면접위원과의 거리 1.5m 내외로 가깝게 조정 .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. 면접시간 1.5배 연장
시각 장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. 전담도우미 지원 .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. 자료작성 타이핑 인력 제공 . 관련서식 확대 제공 .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. 토론 또는 개인발표과제 작성.검토 시간 1.5배 연장
청각 장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. 전담도우미 지원 . 필담면접, 문자통역, 의사전달용 컴퓨터 제공 . 보조공학기기(인공와우 등) 착용 허용 . 관련자료 서면 제공 .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. 면접시간 1.5배 연장

편의지원 대상 및 방법

구 분	주 요 내 용
대 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·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
기간 및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 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편의지원 신청 : 원서접수 마감일 까지 - 관련서류 제출 : 원서접수 마감일 까지 · 방 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입사지원서 작성 시 본인의 해당 여부, 지원요건, 구비서류, 편의지원 항목을 확인 후 입사지원서 및 편의지원 신청화면에서 편의지원 내용 기재 (채용 홈페이지 신청) - 증빙서류(장애인 증명서, 의사진단서 등)는 스캔하여 입사지원서 작성시 첨부파일로 제출(등록)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상이등급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· 의사진단서 제출시 아래 사항을 필수로 충족하여야 합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발급 받은 원본 ※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에서 발급 ※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(날인)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※ 상이등급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표에 해당하는 장애유형과 정도가 의사진단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·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유형과 관련된 보조기기에 한함 · 편의지원 신청자에 대한 편의지원 제공여부 결정은 채용홈페이지에 게재 될 예정이며, 반드시 자신의 편의지원 신청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